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2859 호

제출년월일 : ２０２３년 4월 24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」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의 결정방법 및 생활임금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생활임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결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삭제함.(안 제3조 및 제4조)

나.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며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하도록 함. (안 제5조)

다. 위원의 위촉 해제, 위원회 소집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. (안 제6조 및 제7조제2항)

라. 매년 고시되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기로 함.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23. 3. 23. ~ 4. 12.) 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구 및 구 출자·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 중 “생활임금위원회”를 “생활임금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이 끝나면 자동해산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”을 “필요한 경우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그대로 따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가 심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라 결정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대상)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구 및 구 출자·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	**제3조(적용대상)**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구 및 구 출자·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	**제4조(위원회의 설치)** ① ---------- ---------- 생활임금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----------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②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	<삭 제>
3.·4. (생 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	**제5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	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	
제6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 1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	**<삭 제>**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생 략)	**제7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	**<삭 제>**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,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	⑥ ------ 필요한 경우 ----------. ----------
제8조(생활임금의 결정)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	**제8조(생활임금의 결정)** ① 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결정한다. <단서 신설>	------. 다만,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그대로 따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.	③ ------ 제1항에 따라 결정된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